

“제가 집주인을 만나고
나서도 아파트 임대
가능할까요?”



아파트가 "이미 계약이 되었다"거나 "보험이 취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"는 말은
집주인이 여러분을 차별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.

주택 거래 시 차별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실 경우 주택도시개발부 또는 여러분 지역의
공정주택거래센터에 연락해 주십시오.

www.hud.gov/fairhousing 에 방문하시거나 주택도시개발부 핫라인
1-800-669-9777 (음성) **1-800-927-9275** (TTY)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당신의 선택, 당신의 권리, 당신의 집입니다.



미주택도시개발부와 전국공정주택거래연합이 함께 하는 공익 메시지입니다. 연방
공정주택거래법은 인종, 피부색, 종교, 국적, 성별, 가족 조건 또는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
있습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www.hud.gov/fairhousing 을 참조하십시오.

NFHA
National Fair Housing Alliance